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 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633] [홈페이지/대표이메일]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3.11.08] <http://www.elandeat.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5.04.09] elandfood@eland.co.kr

[아시아문]

정 보 공 개 서

(주)이랜드이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이랜드이츠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 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77-1259]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856-0809]

[가맹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1811-241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려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이랜드 이즈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9.07.01	2019.07.01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법인등록번호	110111-7155412	사업자등록번호	514-86-010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황성윤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준수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사내이사)	김상범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감사)	김상범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사내이사)	오진석	아시아문 외 10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사내이사)	박위근	아시아문 외 10 개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6, 213 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김준수	1577-1259	02-856-080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켄싱턴 월드	프랑제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길 8-2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	070-4741-4411	02-588-0635
	법인등록번호	110111-3964172	사업자등록번호	104-86-1674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이랜드 김스클럽	김스편의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59 10 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황성윤	080-500-5060	02-000-0000
	법인등록번호	110111-8439584	사업자등록번호	594-88-0245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 · 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켄싱턴 월드	프랑제리	2025.2.28	(본점) 강원도 고성군 토성명 신평골길 8-25 (연락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306 호	황성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시아문]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시아문	
상 호	아시아문 OO 점	
상표(서비스표)	아시아문	등록번호 : 41-0244404-0000
	Asiamoon	등록번호 : 41-0244402-0000
		등록번호 : 41-0257672-0000
		등록번호 : 41-0257673-0000

5.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 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71,270,427	69,311,736	1,958,691	200,835,906	-19,415,474	-31,680,933
2022년	94,489,768	84,278,716	10,211,052	253,577,697	6,019,094	8,785,673
2023년	178,205,863	142,456,643	35,749,220	355,294,952	17,762,273	26,358,410

2)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 매출액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산정 근거

- 1) 가맹점 매출 : 자사 발주 프로그램을 통한 발주매출 기준으로 산정
- 2) 직영점 매출 : 자사 포스 프로그램을 통한 판매매출 기준으로 산정

※ 2020 년과 2021 년에 19 년부터 더카페와 루고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로 통합 관리하여 영업표지별 별도의 매출액은 없고 합계 매출액만 존재합니다. 2022 년 부터는 별도 브랜드로 관리하여 영업표지별로 매출을 기재하였습니다.

※ 반궁,테루,아시아문,후원,다구오는 2022 년 부터 통합 관리하여 영업표지별 별도의 매출액은 없고 합계 매출액만 존재합니다. 2023 년 부터는 별도 관리하여 영업표지별 별도의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다구오, 후원은 2021 년 4 월 이후로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황성윤	대표이사	2021.07.01.~현재	(주)이랜드이츠 대표이사	업무 총괄
	김준수	대표이사	2024.03.22~현재	(주)이랜드이츠 대표이사	업무 총괄
	오진석	사내이사	2023.04.06~현재	(주)이랜드이츠 사내이사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혜영	사내이사	2023.04.06~현재	(주)이랜드이츠 사내이사	관리
	김상범	감사	2022.03.23.~현재	(주)이랜드이츠 감사	감사
	박위근	사내이사	2024.12.04~현재	(주)이랜드이츠 사내이사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5		5,958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가맹본부	(주)이랜드 이즈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피자몰(등록번호: 20080100258)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2021.04 *현재 가맹사업 진행하지 않음으로 정보공개서 취소함	후원(등록번호: 20080100255)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더카페(등록번호: 20080100257)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루고(등록번호: 20120100173)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테루(등록번호: 20170832)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2021.04 *2021.04 월 정보공개서취소 2023.11~ *2023.11 월 정보공개서 재등록	아시아문(등록번호: 20231633)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2021.04 *현재 가맹사업 진행하지 않음으로 정보공개서 취소함	다구오(등록번호: 20170830)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페르케노(등록번호: 20171150)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리미니(등록번호: 20171428)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9.07.~현재	반궁(등록번호: 20181368)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2.19~현재	스테이크어스(등록번호: 20200104)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1.10.20~현재	애슐리투고(등록번호: 20212897)이라는 브랜드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11.1~현재	프랑제리(등록번호:20181364)라는 브랜드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켄싱턴 월드	가맹사업 경영	2020.11.1~ 2025.02 * (주)이랜드이츠에 프랑제리 가맹사업을 양도함	프랑제리(등록번호:20181364)라는 브랜드 경영
	(주)이랜드 김스클럽	가맹사업 경영	2024.12.5~현재	김스편의점(등록번호:20241635)라는 브랜드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아시아문	제품사용 및 대가 수수	2012-11-12	등록번호:41- 0244404-0000	(주)이랜드이츠	2032-11-12
Asiamoon		2012-11-12	등록번호:41- 0244402-0000		2032-11-12
		2013-04-29	등록번호:41- 0257672-0000		2033-04-29
		2013-04-29	등록번호:41- 0257673-0000		2033-04-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아시아문] 가맹사업 현황

1. [아시아문]을 시작한 날: 2017년 10월 2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1년 11월 17일)

2. [아시아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본점 소재지
주)이랜드 파크	아시아문	김현수	2017.10.25~2019.6.3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길 8-25
주)이랜드 이츠	아시아문	김현수 김완식	2019.7.1~2019.1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가산동)
주)이랜드 이츠	아시아문	김완식	2019.10.11.~ 2021.06.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가산동)
주)이랜드 이츠	아시아문	황성윤	2021.07.01~ 2024.03.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213호
주) 이랜드 이츠	아시아문	황성윤/김준수	2024.03.22~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213호

3. [아시아문] 업종

영업표지	업종
------	----

아시아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국식		쌀국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시아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3	2	1	3	2	1
서울	1		1	1		1			1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2		2	2			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 년 간 [아시아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2
2022	2					2
2023	2					2

6. [아시아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시아문]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 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 본부	(주) 이랜드 이즈	피자몰	20080100258	피자	3/10	3/11	3/18
		후원	20080100255	냉면	3/0	3/0	2/0
		더카페	20080100257	커피	171/1	167/0	155/0
		루고	20120100173	원두 커피	10/1	10/1	9/1
		테루	20170832	돈까스	12/1	12/1	11/3
		다구오	20170830	철판 볶음밥	4/0	4/0	4/0
		페르 케노	20171150	젤라또	4/1	4/1	9/1
		리미니	20171428	파스타	2/18	2/20	1/26

		반궁	20181368	한식	15/1	14/2	14/2
		스테이크어스	20200104	기타 외국식	13/9	13/5	13/5
		애슐리 투고	20181368	샐러드	0/1	0/3	0/5
특수 관계 인	(주)이랜드 김스클럽	김스 편의점	20241635	편의점	0/0	0/0	0/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아시아문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 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86, 213 호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체가맹점이 5 곳 미만(총 2 곳)으로 보완상의 이유로 전체가맹점의 상하한 금액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8. [아시아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아시아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1986 일(5년 5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2년에 [아시아문]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8-1]을 참고하십시오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또는 (주)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광고 영업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4	02-2010-2189
농협은행	용산금융센터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22 1층	02-3273-613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 방식 :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부가서비스-가맹점예치제 서비스’ 클릭 후 회원정보(인출계좌 등)를 입력합니다. 회원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가맹사업본부 중 ‘이랜드이즈’를 선택하고, 금액(가맹금) 입력 후 완료를 선택하시면 지정하신 인출계좌에서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 예치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 오프라인 방식 : 가까운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 지점 창구에서 이랜드이즈를 가맹점사업본부로 지정하셔서 입금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또는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가입비	3,3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 시 당사 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운영매뉴얼 제공비	1,100				
	오픈 지원비	1,100				
교육비		3,300	계약 체결일	교육 시작 1 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현금)보증금	5,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한 달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3 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99 m²,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7,885 ~ 68,637	1,930 ~ 2,288			30 평 기준

실사 및 도면제공비	가맹본부	0	0			가맹본부 지원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 선정업체	20,000 ~ 26,000	667 ~ 867	설치 1 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입찰에 의한 지정업체 또는 가맹사업자 선정업체	30,385 ~ 34,137	1,013 ~ 1,138	내부인테리어 공사 시작 5 일 이전 50% 지급 공사 완료 후 10 일 이내 50%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특이공사 (인프라/ 사인) 비용은 별도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주)이랜드 이즈	5,000	167	물품 공급 후 10 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식·부자재 2 주 영업분)
최초 공급 영업기물	협력업체 또는 가맹사업자 선정업체	2,500~ 3,500	83~117			

- ① 귀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및 일부 기기장비의 시공 및 공급을 당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공 수준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귀하가 당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에 대신해 줄 것을 의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귀하가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귀하를 대신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해 줄 것을 당사에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최저 비용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저가 입찰제도를 운영합니다.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 당사가 적합한 시공 수준을 가진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드리면 귀하는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하여 공사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업체 선정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 ③ 당사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강제 지정하지 않기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인테리어 시공의 도면적합성 등에 대한 본사의 감독이 필수적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를 청구합니다.

*감리비: 3.3 m²당 220 천원

- ④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귀하의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외장공사, 화장실공사, 인프라 공사, 소방공사 및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 표의 업체는 당사의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프랜차이즈 개발팀 (전화: 1811-241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아시아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표의 업체는 당사의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주)이랜드 이즈	행사내용에 따라 비용 상이	당월말일	광고 실시전	광고실물 제작비용	[V-8]참고
판촉분담금	(주)이랜드 이즈	행사내용에 따라 비용 상이				[V-8]참고
로열티	(주)이랜드 이즈	월 실매출액의 5%	익월말일	반환불가		

교육훈련비	(주)이랜드 이츠	660/1 일 (총 5 일)	익월말일	반환불가	교육비용	교육 필요시 진행, 재교육가능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입찰에 의한 지정업체	각 진행사항에 따라 견적서 검 토 후 비용 부담				
점포환경개 선 비용	입찰에 의한 지정업체	해당 법령에 따 라 비용 부담	리모델링 공사완료 후 7 일 이내			[Ⅶ-1]참고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가맹본부	21	당월 말일	불가	정기 POS 유지 보수비	
이랜드잇 마일리지 관련	(주)이랜드 이츠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내용에 따름
지연이자	(주)이랜드 이츠	연 9%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를 위반한 경우

※ 위 표의 업체는 당사의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POINT 통합 포인트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이 매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 시, 구매금액의 [0.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어야 한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액의 50%를 부담한다. 당
포인트의 적립부분의 50%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매월 1 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 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회원의 적립 포인트가 2,000 포인트 이상 되었을 경우 100 원 단위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토록 한다.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단, 1 포인트는 현금 1 원에 해당하며,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인트로 구매 시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적립하지 않는다. 포인트 적립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삭제·또는 수정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후의 절차를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내용에 따라 당월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의 포인트 적립금은 가맹본부에 예치되며 별도로 반환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다. 단, 폐점일 전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은 폐점 이후 1 개월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다.

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스캐너 장비는 가맹사업자가 별도 구매하기로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 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 땀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아시아문 가맹점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가맹사업자가 조달하는 것으로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 재고관리 등의 감독내역은 없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그룹사 내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양도는 본 항에서의 타사업자로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아시아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이랜드이츠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운영하기 위한 운영매뉴얼 제공 비용과 양수 후 운영 업무 지원에 필요한 오픈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53~54 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아시아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표의 업체는 당사의 정기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아시아문] 가맹점사업자로 하역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 당사가 [아시아문] 가맹점사업자로 하역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쌀국수 등 기타외국식	아시아문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반경 500M 에 준하는 범위 (주동선,유동인구,배후인구,4 차선 이상의 도로,철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유효범위에 맞게 조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예외1.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거리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예외2. 특수상권의 경우 층을 달리 할 경우에는 추가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사유발생→당사담당팀 검토→영업지역변경(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 입점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아시아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54%	4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전용상품비중	온라인전용상품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영업개시일로부터) 3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 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 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5 조 1 항 1 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위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5 조 1 항 2 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5 조 1 항 3 호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45 조 1 항 4 호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5 조 1 항 5 호

○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본사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5 조 1 항 6 호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 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35 조 1 항 1 호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무단으로 불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5 조 1 항 2 호
○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5 조 1 항 3 호
○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5 조 1 항 4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6 조 제 6 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5 조 1 항 5 호
○ 가맹점사업자가 본사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5 조 1 항 6 호
○ 가맹점사업자가 미납한 원·부재료 등 상품 대금의 누적 합계가 본 계약서 제 24 조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5 조 1 항 7 호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 개월에 걸쳐 누적하여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5 조 1 항 8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6 조 2 항 1 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46 조 2 항 2 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6 조 2 항 3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6 조 2 항 4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6 조 2 항 5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에 따른 본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본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6 조 2 항 6 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6 조 2 항 7 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46 조 2 항 8 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6 조 2 항 9 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상기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기존 가맹계약의 내용을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 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 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부 (1577-1259) 각 영업 DM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 동안 가맹사업권이 인정되며, 양수인은 가입비를 제외한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가맹금이 면제되며, 단 소정의 교육비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구분	가능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대리 경영자가 부담함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아시와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쌀국수 등 기타 외국식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부 (1577-1259) 각 영업 DM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시아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0:00 (10 시간)	유통점 휴무일은 휴무	영업부 협의하에 상권별 변경가능 문의: 영업부 (1577-12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영업시간 또는 일수는 귀하의 가맹점의 매장 입점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 회/3 달	본사 담당자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상태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 회/3 달	본사 담당자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시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 회/3 달	본사 담당자	

당사는 관리감독 항목에 대한 변경, 감독절차 및 빈도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에 귀하에게 통보 후 관리 감독을 실행합니다.

※ 영업장 관리시트는 가맹계약 후 오픈 교육시 제공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아시아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 광고	전액 부담	없음		
월간 판촉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 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

- 가)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E.POINT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방(이행보조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 다) 점주 또는 그 종업원이 E.POINT 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점주에게 있다.
- 라) 점주는 본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약벌

본사와 점주는 전조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위약벌로써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가) 점주가 점포설비를 본사가 지정한 사양으로 하지 않은 경우(제 16 조 위반) : 금 일천만원(W 10,000,000)
- 나) 어느 일방이 합의해지를 위한 협의개시 요청 기한을 위반한 경우(제 46 조 제 5 항 위반) : 금 일천만원(W 10,000,000)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5 일 내외	IV.가맹 사업자의 부담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4~3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26~2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8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D-17(1 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5~13(3 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2(1 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11~2(10 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2(10 일)	
물품 공급	- 초도 물품 공급	D-2~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공사 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2 차: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영업팀 (070- 7013- 6940)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기간,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 비용 등포함)를 가맹점사업자 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3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영업팀 (070- 7013- 694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레시피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강의 /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20 일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제품 관리 종업원 관리 실무 등	강의 / 실습교육	브랜드가 판단하 여 필요시	필요시 필수적 으로 이수
QSC 교육	매장청결 서비스 제품품질 관리	강의 / 실습	매 분기별 1 회	권유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아시아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 일(이론교육) + 1 일(실습교육) + 3 일(현장교육) (단, 현장교육 평가점수 미달 시 2 일 보수교육)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 일	200	요청시 필수적으로 이수 (1 인 기준)
QSC 교육	4 시간 이내	무료	선택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모든 신규점은 기한내 신규 교육을 가맹계약서 제 20 조에 따라 영업개시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포 영업개시가 지연되거나 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온라이프 NC 강서점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 길 17 엔 씨백화점 9 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년 10 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기획팀(070-7013-694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eland.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자료 2. 가맹금예치신청서

[별지 서식]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 3. 공급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